

정책연구

# 세계개편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8. 10

제주발전연구원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b>II. 세제개편안 내용 종합</b> .....	3
1. 소득세 인하 .....	3
2. 법인세율 인하 .....	8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9
4.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12
5. 상속세의 현실화 .....	13
6. 3대 목적세 체계 정비 .....	13
7. 기타 과세 체계 정비 .....	14
8.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16
9. 각종 지원 확대 .....	19
<b>III. 분석 모형 설정</b> .....	27
1. 분석의 전제 .....	27
2. 모형의 설정 .....	29

IV. 분석 결과 .....	31
1. 분석 결과 .....	31
2. 소결 .....	39
V. 세계개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40
1. 세계개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기획재정부) .....	40
2.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
3. 제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 .....	45
4.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	47
5. 세계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	48

## < 표 차례 >

<표 2-1> 소득세율 변경 .....	3
<표 2-2> 소득세 공제 체계 개편 .....	4
<표 2-3> 교육의료비 특별공제 조정 .....	5
<표 2-4> 인적 공제 대상 조정 .....	6
<표 2-5>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감세효과 .....	7
<표 2-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	9
<표 2-7>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조정 .....	11
<표 2-8> 부동산 세제개편안 .....	12
<표 4-1> 소득세 인하에 따른 생산 효과 .....	32
<표 4-2> 소득세 인하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	33
<표 4-3> 소득세 인하에 따른 고용 효과 .....	34
<표 4-4> 법인세 인하에 따른 생산 효과 .....	36
<표 4-5>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	37
<표 4-6> 법인세 인하에 따른 고용 효과 .....	38
<표 4-7> 분석결과 종합 .....	39
<표 5-1> 세제개편의 경제적 기여도 .....	41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지난 9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 세부추진 내용을 발표함
- 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으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세제개편은 각 지역·단체마다 찬반이 엇갈리는 극명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생각대로 기업의 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거시적 측면에서 영향을 분석함

- 또한 이번 세계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거나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세계개편안은 대다수 서민들과 지방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은 소득세 인하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은 0.5%,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기타 분석방법으로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보고된 보고서 및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2008)이 작성한 '2003년 제주지역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두 지역(제주 - 전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2003년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수입 및 생산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투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II. 세제개편안 내용 종합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으며,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1. 소득세 인하

<표 2-1> 소득세율 변경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율</li> <li>○ 1,200만 원 이하 : 8%</li> <li>○ 4,600만 원 이하 : 17%</li> <li>○ 8,800만 원 이하 : 26%</li> <li>○ 8,800만 원 초과 : 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별 2%p 인하</li> <li>○ 1,200만 원 이하 : 6%</li> <li>○ 4,600만 원 이하 : 15%</li> <li>○ 8,800만 원 이하 : 24%</li> <li>○ 8,800만 원 초과 : 33%</li> <li>※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li> </ul>

- 소득세율 단계적 2%포인트 인하 : 중산·서민층 민생 안정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2%포인트 낮아짐. 구간별 변화는 △ 1천200만 원 이하 8→6% △ 4천600만 원 이하 17→15% △ 8천800만 원 이하 26→24% △ 8천800만 원 초과 35→33% 등임. 2009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 1%포인트를 먼저 낮추고 나머지 1%포인트는 2010년부터 인하됨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함

<표 2-2> 소득세 공제 체계 개편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인당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00%</li> <li>○ 총급여 500~1,500 : 50%</li> <li>○ 총급여 1,500~3,000 : 15%</li> <li>○ 총급여 3,000~4,500 : 10%</li> <li>○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 5%</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인당 공제액 50만 원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최하구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8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 현행 기본공제 100만 원은 '96년에 72만 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 교육·의료비 등 특별공제 조정 : 취학 전 아동·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함.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남. 또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만기 30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합계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늘어남. 반면 혼인  
 · 장례 · 이사 비용 공제 제도는 폐지됨

<표 2-3> 교육의료비 특별공제 조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공제 ○ 본인 :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 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공제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 전액 공제 ○ 부양가족 : 연 500만 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 공제한도 : '①+②+③' 합계 연 1,000만 원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 ①,②의 경우 '①+②'는 300만 원 별도한도 <input type="checkbox"/>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100만 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연 300만 원으로 확대 ○ 연 800만 원으로 확대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연 700만 원으로 확대 <input type="checkbox"/>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 '①+②+③' 합계 연 1,500만 원으로 확대 <폐 지>

- 인적공제 대상 조정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추가하고,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표 2-4> 인적 공제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li> <li>-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li> <li>-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li> </ul> </li> </ul> </li> <li>□ 경로우대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 : 연 100만 원 추가공제</li> <li>○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 연 150만 원 추가공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li> <li>- (좌 동)</li> <li>-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li> <li>*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선정</li> </ul> </li> <li>□ 경로우대 추가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 배제</li> </ul> </li> </ul>

<표 2-5>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감세효과

○ 1인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23	22	△1	△6.4%	23	18	△5	△19.8%
4,000만원	228	213	△15	△6.4%	228	190	△38	△16.6%
6,000만원	534	501	△33	△6.1%	534	460	△74	△13.8%
8,000만원	964	918	△47	△4.8%	964	858	△106	△11.0%
10,000만원	1,442	1,377	△65	△4.5%	1,442	1,299	△143	△9.9%

○ 4인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10	6	△4	△43.2%	10	5	△5	△51.3%
4,000만원	169	133	△35	△20.9%	169	115	△53	△31.7%
6,000만원	474	421	△53	△11.2%	474	385	△89	△18.8%
8,000만원	873	793	△81	△9.2%	873	738	△135	△15.5%
10,000만원	1,351	1,252	△99	△7.3%	1,351	1,179	△172	△12.7%

- ※ 기본공제액 50만 원 인상 및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 20% 축소 반영
- ※ 위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 시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위 세액보다 낮음

## 2.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상향조정 :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는 25%이지만 과표구간이 2억 원으로 상향돼 과표 2억 원 이하는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낮아짐. 과표 2억 원 초과는 최초 적용시기만 1년 늦춰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됨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에서 2008년과 2009년은 8%로 낮아지고 2010년 이후는 7%로 축소됨.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3%였지만 2009년까지는 11%, 2010년 이후는 10%로 인하되며 1억 원 초과는 15%에서 2009년까지 14%, 2010년 이후 13%로 낮아짐

-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배당소득 가산율이 15%이지만 2009년 소득분부터 12%로 낮아지고 2011년 소득분부터는 11%로 하향 조정됨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율·지점세율 인하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점세율도 25%에서 20%로 낮춤

###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표 2-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현 행	개 정 안
<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p> <p>① 보유 및 거주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보유 및 2년 거주</li> <li>*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li> </ul> <p>② 고가주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li> <li>* 6억 원 초과분만 과세</li> </ul>	<p>① 거주요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보유 및 3년 거주</li> <li>-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li> </ul> <p>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주택</li> <li>* 9억 원 초과분만 과세</li> </ul>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됨. 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수도권)가 적용됨.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됨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앞으로 취학,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2-7>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 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 원 이하	9%	1,200만 원 이하	6%
1~4천만 원	18%	1,200~4,600만 원	15%
4~8천만 원	27%	4,600~8,800만 원	24%
8천만 원 초과	36%	8,800만 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내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천200만 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 원 15%, 4천600만~8천800만 원 24%, 8천800만 원 초과 33%로 조정됨
-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함

#### 4.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됨

<표 2-8>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현 행	개 정 안
<p>□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p> <p>① 보유 및 거주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보유 및 2년 거주*</li> <li>*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li> </ul> <p>② 고가주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li> <li>* 6억 원 초과분만 과세</li> </ul>	<p>① 거주요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보유 및 3년 거주</li> <li>-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li> </ul> <p>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주택</li> <li>* 9억 원 초과분만 과세</li> </ul>

-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됨



## 5. 상속세의 현실화

-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조정함.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5억 원 이하 6%, 5억~15억 원 15%, 15억~30억 원 24%, 30억 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됨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됨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상속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해줌

## 6. 3대 목적세 체계 정비

-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함. 유류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

-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 : 현재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등은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자동차분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천~2천cc는 6.5%, 2천cc 초과는 13%의 세율이 적용됨.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가량을 부과하는 교육세도 각각 본세에 통합함.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로 전환함
  
-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에 대한 부가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감면액의 20%(저축은 10%), 조특법상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 흡수통합됨. 다만 종합부동산세분에 붙는 부가세(납부세액의 20%)는 폐지됨

## 7. 기타 과세 체계 정비

- 올해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11건이 폐지, 6건이 축소됨.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고속

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11건이 폐지대상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저축가입한도가 20세 이상은 1천만 원으로,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3천만 원으로 축소됨. 이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제도도 축소됨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무도학원 등)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을 유지함.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검토함
-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함. 과세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천만 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8.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 납세자 권익 보호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조세불복제도 보완) :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이 5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
- 과세 전 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를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함
-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 :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 공매를 제한함
-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 납세협력비용 감축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 월별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로 변경됨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 장비·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함
-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제출의무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에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

○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활성화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 대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해 줌
-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남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내년부터 음식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함
- 사업용 계좌 관련 제도 보완 :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하고 미사용가산세, 미개설가산세도 각각 0.5%에서 0.2%로 완화함. 현금거래 시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도 폐지됨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연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상당의 소득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0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됨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 현재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고급(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함
- 농업용 난방기 사용 유종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온수 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함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 제도 개선 : 이중장부 작성, 재산 은닉 등 부당한 방법의 경우 관세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강화하고 상한도 폐지함

○ 국가균형발전 지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자도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혜택을 제공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이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내국인 투자는 20억 원 이상시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 시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1년 말까지 3년 연장됨.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시 소득·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도 역시 2011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 행복도시 등 본사·공장의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줌

## 9. 각종 지원 확대

### ○ 유가환급금 지급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이미 조치) :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액이 2천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연간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대중교통·물류 유가보조금 지급(이미 조치) : 유가연동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낮추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함
- 1t 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이미 조치) :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를 내년 6월까지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난방유 개별소비세율을 30% 낮춤. 등유는 ℓ 당 90원에서 63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됨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기준 인상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1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 현재 원양어선·국외항행 선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150만원' 한도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를 해외건설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함
- 농어민 세제 지원 확대 : 비과세 대상인 '기타 농가 부업소득'의 기준을 연 1천2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으로 올림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 비료·농약·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함
- 자경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내년부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현행 '1년간 1억 원'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1억 원을 추가로 인정함
-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연장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함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적용했으나,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과 건설업,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됨
-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 소득세 분납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됨
-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 도입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과세하도록 허용함. 다만 공장 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연결납세제도 도입 : 연결과세표준을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연결 수정해 수정소득금액(결손금 포함)을 산출하고 이를 통산해 연결소득금액으로 계산함. 적용범위는 100% 자회사로 우리나라 주조합과 스톡옵션은 지분비율 판정 시 5% 이내 예외를 인정하며 적용방법은 기업이 선택하되 5년 간 계속 적용함
-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발생 후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 부가가치세 과세단위가 현행 사업장 단위 원칙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사업자에 사업자단위 과세를 허용함
-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비율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에서 배당지급법인(자회사)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일부 제한한 조건이 폐지돼 모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됨

○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 감면 : 지방(서울, 인천, 경기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1만2천 원이 면제됨
-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R&D(연구개발) 지원 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함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 :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관세액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함
-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국회사의 지분 100% 보유 내국인과 공동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 해저광물자원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시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함

○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 유도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함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해당 면제한도는 100만 원이며 교육세를 포함하면 130만 원임
-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함
-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 경감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감면(50%) 대상을 현행 52개 품목에서 확대하며 관세감면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포함함

○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하는 절차를 외국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투자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할 경우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하지만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하면 원천징수를 면제함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정비 : 자통법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함. 간접투자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를 매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고쳐 투자자산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결산 시 과세 또는 환매 시 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됨.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4%)를 폐지하며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함
- 접대비 개념 명확화 : 일정 요건을 갖춘 5천 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 없이 전액 광고 선전비로 인정하고 접대비로 보지 않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을 명확화 함
- 현지 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 현지판매법인(도매업)의 경우 현지판매법인과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해야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매입요건을 폐지함

○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R&D 지원 확대

- 준비단계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로 제한됨

- 투자단계

-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기업이 R&D를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7%에서 10%로 확대함

- 비용 지출 단계

-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시한을 폐지해 영구화 함.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당해 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당기분 방식의 적용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요건을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산학 협력 단계

-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

학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늘림

- 대학에 대한 R&D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와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함

-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함
-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 과거 10년 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세함

### Ⅲ. 분석 모형 설정

-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비기반 확충 지원과 저세율 구조 전환을 통한 투자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율 변경, 소득세 공제 체계 개편, 법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제과급효과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시의 경제과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구간별 2% 인하될 예정이며, 법인세율은 과표 1억 원 이하 13%에서 과표 2억 원 이하 10%로, 과표 1억 원 초과 25%에서 과표 2억 원 초과 20%로 3~5% 인하될 예정임

#### 1. 분석의 전제

- 정부는 소득세 2% 및 법인세 3~5%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소득세 인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법인세 인하 또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킬 것임

-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율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증가율과 투자증가율을 산출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연간 3조 6000억 원, 소비증가율이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증가율은 7%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였음<sup>1)</sup>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은 0.5%,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경제과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단, 세수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정부지출 감소에 따른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음
  -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는 세수를 감소시키고, 세수 감소는 정부지출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본 연구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발전연구원(2008)이 작성한 “2003년 제주지역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2003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이후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수입 및 생산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투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2. 모형의 설정

-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생산 변화, 부가가치 변화, 고용 변화로 나타나게 됨
- 세율 변화에 따른 생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 변화분은 승수행렬에 의해서 측정됨

$$\Delta X = (I - CA)^{-1} \Delta C \quad \dots \text{식(1)}$$

$\Delta X$  : 산업별 생산액 변화 행렬

$I$  : 단위행렬

$CA$  : 두지역 투입-산출계수 행렬

$\Delta C$  : 세율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및 민간고정자본형성 변화행렬

- 세율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음
- 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분은 부가가치 승수에 의해 측정됨
- 부가가치 승수는 부가가치 계수와 승수행렬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Delta V = \widehat{A}_v \cdot (I - CA)^{-1} \Delta C \quad \dots \text{식(2)}$$

$$A_v = \left( a_{v1}^r, \dots, a_{vn}^r, a_{v1}^s, \dots, a_{vn}^s \right)$$

$\Delta V$ :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행렬

$$a_{vj}^r: r\text{지역 } j\text{산업의 부가가치 계수} \left( = \frac{V_j^r}{X_j^r} \right)$$

- 세율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음
- 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분은 고용 승수에 의해 측정됨
- 고용승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Delta E = \widehat{A}_e \cdot (I - CA)^{-1} \Delta C \quad \dots \text{식(3)}$$

$$A_e = \frac{e_j}{X_j}, \quad e_j = \frac{W_j}{w_j^{avg}}$$

$\Delta E$ : 산업별 고용 변화 행렬

$w_j^{avg}$ : 전국산업평균 임금

$W_j$ : 산업별 노동 소득

$e_j$ : 산업별 고용자수

$X_j$ : 산업별 생산

## IV. 분석 결과

### 1. 분석 결과

- 소득세 2% 인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즉 생산 증대 효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 ~ <표 4-3>과 같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제주지역 내 생산 증대 효과는 연 38,303.07백만 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21,774.61백만 원으로 분석됨
    - 생산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작물산업, 부동산업, 음식점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순이었음
    -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 작물산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 및 연구업 순이었음
  - 고용은 연간 약 338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 및 연구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보관업 순이었음

<표 4-1> 소득세 인하여 따른 생산 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 부문	생산 효과
작물	4,936.25
부동산	4,683.79
음식점 및 숙박	4,025.48
금융 및 보험	2,687.82
도소매	2,464.45
운수 및 보관	2,326.41
문화오락서비스	2,110.73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2,101.63
교육 및 연구	2,001.58
통신 및 방송	1,499.70
수산물	1,471.29
기타서비스	1,101.86
전력	982.97
사업서비스	977.75
축산	827.71
육류 및 낙농품	701.84
가계외 소비지출	547.99
음료품	481.60
건축 및 건축보수	371.66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278.65
∴	∴
합계	38,303.07

<표 4-2> 소득세 인하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 부문	부가가치 효과
부동산	3,587.73
작물	3,569.79
금융 및 보험	1,837.91
음식점 및 숙박	1,798.09
교육 및 연구	1,653.40
도소매	1,499.75
문화오락서비스	1,243.19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1,126.12
운수 및 보관	987.22
통신 및 방송	890.17
수산물	663.29
사업서비스	582.68
기타서비스	503.73
전력	395.14
음료품	277.41
축산	181.25
건축 및 건축보수	168.35
임산물	160.10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108.17
육류 및 낙농품	73.07
∴	∴
합계	21,774.61

<표 4-3> 소득세 인하여 따른 고용 효과

(단위 : 명)

산업 부문	고용 효과
음식점 및 숙박	56
도소매	46
교육 및 연구	41
금융 및 보험	26
운수 및 보관	26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26
문화오락서비스	19
작물	19
기타서비스	18
사업서비스	11
부동산	10
수산물	9
통신 및 방송	6
건축 및 건축보수	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3
육류 및 낙농품	2
전력	2
축산	2
인쇄, 출판 및 복제	2
임산물	2
∴	∴
합계	338

- 법인세 3~5% 인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즉 생산 증대 효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 ~ <표 4-6>과 같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제주지역 내 생산 증대 효과는 연 136,246.73백만 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65,229.99백만 원으로 분석됨
    - 생산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운수 및 보관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순이었음
    -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순이었음
  - 고용은 연간 약 1,396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 사업서비스업 순이었음

<표 4-4> 법인세 인하여 따른 생산 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 부문	생산 효과
건축 및 건축보수	55,492.25
토목건설	22,222.13
운수 및 보관	8,104.95
도소매	7,696.66
사업서비스	7,016.8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6,184.17
부동산	5,879.71
금융 및 보험	3,940.95
작물	2,902.46
음식점 및 숙박	2,395.80
통신 및 방송	1,863.99
금속제품	1,771.99
가계외 소비지출	1,542.56
비금속광물	1,199.92
전력	1,120.72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062.34
플라스틱제품	494.45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485.45
축산	409.69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341.10
∴	∴
합계	136,246.73



<표 4-5>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 부문	부가가치 효과
건축 및 건축보수	25,138.94
토목건설	10,050.80
도소매	4,680.62
부동산	4,504.99
사업서비스	4,181.21
운수 및 보관	3,439.15
금융 및 보험	2,694.13
작물	2,100.06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1,900.63
통신 및 방송	1,106.32
음식점 및 숙박	1,070.48
비금속광물	863.63
금속제품	533.83
전력	448.57
기타비금속광물제품	371.59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183.82
플라스틱제품	172.02
수산물	153.22
교육 및 연구	150.93
문화오락서비스	140.50
⋮	⋮
합계	65,229.99

<표 4-6> 법인세 인하여 따른 고용 효과

(단위 : 명)

산업 부문	고용 효과
건축 및 건축보수	699
토목건설	188
도소매	142
운수 및 보관	90
사업서비스	77
금융 및 보험	38
음식점 및 숙박	33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25
금속제품	16
부동산	13
작물	11
통신 및 방송	7
비금속광물	6
기타비금속광물제품	4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4
특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4
교육 및 연구	4
기타서비스	4
인쇄, 출판 및 복제	3
플라스틱제품	3
∴	∴
합계	1,396

## 2. 소 결

○ 앞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7> 분석결과 종합

구 분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합계
생산 효과 (백만원)	38,303.07	136,246.73	174,549.80
부가가치 효과 (백만원)	21,774.61	65,229.99	87,004.60
고용 효과 (명)	338	1,396	1,734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생산 증대 효과는 연 38,303.07백만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21,774.61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약 338명으로 분석되었음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생산 증대 효과는 연 136,246.73백만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65,229.99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약 1,396명으로 분석되었음
- 요약하자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는 연 174,549.80백만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87,004.60백만원, 고용 유발 효과가 연간 약 1,734명으로 분석되었음

## V. 세계개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1. 세계개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 5%p 인하 시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실질GDP 6조 원 증가, 국내투자 10조 원 증가, 취업유발 18만 명으로 예상함
-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율 5%p 인하 시(9조 원 감세) 성장률은 0.6%p 상승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
- 소득세(3.6조 원 감세), 재산과세(0.5조 원 감세) 등 기타 직접세 인하 효과는 0.1~0.2%p로 추정함
- 소비 측면에서 보면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가처분소득(연간 3.6조 원)을 통해 소비증가율 0.5%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투자 측면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투자증가율 7%p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고용면에서는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 예상함

<표 5-1> 세제개편의 경제적 기여도

구 분	현재 상황	세제개편 기여도	합계
성장률	5% 내외	0.6%p+ $\alpha$	5.6%p+ $\alpha$
소비	4% 내외	0.50%	4.50%
투자	4% 내외	7%	11%
고용	20만명 내외	18만명	38만명

## 2.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소득세 인하

- 소득세 인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증가시킴
  -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민간의 소비 증가율이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제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생산 증대 효과는 연 38,303.07백만원으로 분석되었음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가 큰 산업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증대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작물산업, 부동산업, 음식점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순임
  - 산업별 생산 증대 효과는 작물산업 연 4,936.25백만 원, 음식점 및 숙박업 연 4,025.48백만 원, 도소매업 연 2,464.45백만 원, 운수 및 보관업 연 2,326.41백만 원, 문화오락서비스업 연 2,110.73백만 원임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21,774.61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 생산효과가 높은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부동산업, 작물산업, 금융 및 보험업, 음식점 및 숙박업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는 부동산업 연 3,587.735백만 원, 작물산업 연 3,569.79백만 원, 금융 및 보험업 연 1,837.91백만 원, 음식점 및 숙박업 연 1,798.09백만 원임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약 338명으로 분석되었음
- 대체로 노동투입비율이 높은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 및 연구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보관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고용 유발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업 연 56명, 도소매업 연 46명, 교육 및 연구업 연 41명, 금융 및 보험업 연 26명, 운수 및 보관업 연 26명임
-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추진되는 경우, '09년 이후 부동산교부액이 급격히 감소할 것임
- 재산세(시·군·자치구), 거래세(시·도) 감소분을 보전하고 난 후, 시·군·자치구에 교부되는 균형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2)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 투자를 증가시킴
  -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민간 고정자본 형성이 높은 산업부문의 경제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생산 증대 효과는 연 136,246.73백만원으로 분석되었음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가 큰 산업 부문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운수 및 보관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순임

- 건축 및 건축보수업의 제주지역 민간 고정자본 형성은 785,684백만 원으로 전체 민간 고정자본 형성의 66.6%를 차지하고 있음
  - 토목건설업의 제주지역 민간 고정자본 형성은 317,459백만 원으로 전체 민간 고정자본 형성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 타 지역의 경우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생산효과가 높으나, 제주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 건설업의 생산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65,229.99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 생산효과가 높은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주지역의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약 1,396명으로 분석되었음
- 대체로 노동투입비율이 높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인하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소득세 인하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제개편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 인하로 '09년 이후 지방교부세 교부액 및 주민세 세입이 감소할 것임
- 세제개편 방안에 따라 '10년부터 목적세가 정비되는 경우, 지방교부세 교부액 및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임

### 3. 제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

- 9·1정부 감세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확충에 1천억원대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8일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이 대다수 서민들과 지방이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등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4조7천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조9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소액만 1천1백76억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자치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보고서가 산출한 제주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액 6천8백16억 원과 교부비율 3.00%를 적용했을 때 1천1백28억9천만 원이며, 분권교부세도 올해 교부액 3백억 원과 교부율 2.38%로 추정할 때 4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4천6백42억 원과 교부비율 1.57%를 적용했을 때 감소액은 7백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정상적인 재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됨
- 이와 함께 부동산교부세도 올해보다 18억3천만 원이 줄어들어 사업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의 전체적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
- 단순히 목적세 폐지만을 고려하여 교부세 법정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세제 개편의 시행시기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재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 4.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부는 9월 1일 확정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해 카지노 총매출액의 20%를 관련 세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순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해오던 규정은 없애기로 했음
- 그러나 전국 관광업계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29일 개별소비세 세율이 당초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내려갔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은 폐지하려던 것이 유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바뀌었음
-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전환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도내 카지노업계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제주도는 물론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 14개 카지노(내국인 카지노 포함) 가운데 8개 업체가 몰려 있는 제주지역의 카지노업계는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종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카지노가 개설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20~40%가 카지노와 관련된 것이어서 호텔까지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주 관광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카지노사업자의 반대에 부딪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외국인카지노는 물론 관광호텔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임

## 5. 세제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 세제개편은 서민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주축이 될 수도 있음
-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세제개편이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음. 다시 말해 세제개편은 투자 촉진은 물론, 투자의 토대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의 전체적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부세 법정율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교부세 법정율은 현행대로 유지 및 상향 요구하는 등의 장·단기 재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지원 세제로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 투자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내국인 면세점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도 그 가운데 하나임. 하지만 문제는 중앙 행정기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금제도는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대 중앙정부 절충노력이 요구됨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속으로 조세 법률 입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투자 지원세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관리 체계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같은 차별적인 조세 지원이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부각시키는 논리 개발 및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별적인 조세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경제·사회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임
-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과 중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혹은 지방소비세 신설 등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함

- '09년에는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만 나타나므로 교부금 형태의 일시적인 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조정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재정 전체가 부담하게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주민세를 독립세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내·외국인에게 투자세제 혜택을 중앙정부에 확대 요구하여 투자의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관광과 의료, 첨단산업 등에 한정된 조세지원을 금융과 물류 등으로 확대하고, 제주자치도의 도 전역 면세지역화를 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역형평성 등에 떠밀려 제도화 되지 못한 법인세율 확대 인하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도 당국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고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제개편에 따른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정현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 세계개편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쇄일 / 2008. 10.

발행일 / 2008. 10.

발행인 /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8-89-6010-064-0 933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